

자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

2014. 2. 4.

황희연

(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)

목 차

I. 개요

II. 도시재생의 추진 및 계획 체계

III. 자력형 도시재생 기반구축

IV. 맺음말

I. 개요

1. 도시재생의 개념 및 목적
2.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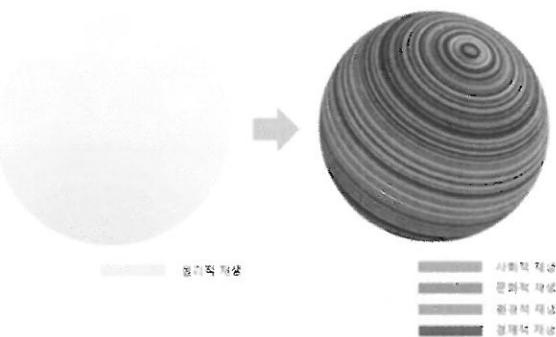
01. 도시재생의 개념 및 목적

1. 도시재생 개념

- 경제·사회적,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대상
- 개별 프로젝트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중요
-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종합적 접근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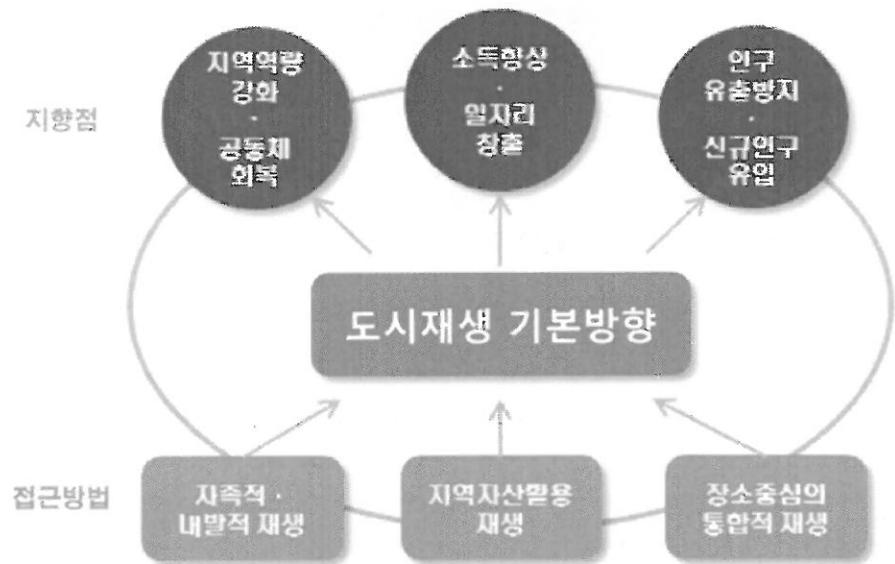
2. 도시재생 목적

-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
- 도시경제 활성화
- 사회·문화적 기능회복



출처 : 전주 테스트베드 3단계 연구개발계획 발표자료

02.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



5/28

II. 도시재생의 추진 및 계획체계

1. 도시재생 추진체계
2. 도시재생 계획체계

01. 도시재생 추진체계

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

국가 차원

- 도시재생 특별위원회(국무총리 소속)
- 도시재생기획단(국토교통부 소속)
- 도시재생지원기구

지방 차원

- 지방도시재생위원회
- 도시재생 전담조직
- 도시재생지원센터

7/28

02. 도시재생 계획체계

장소중심 도시재생의 계획체계 도입

국가 차원

-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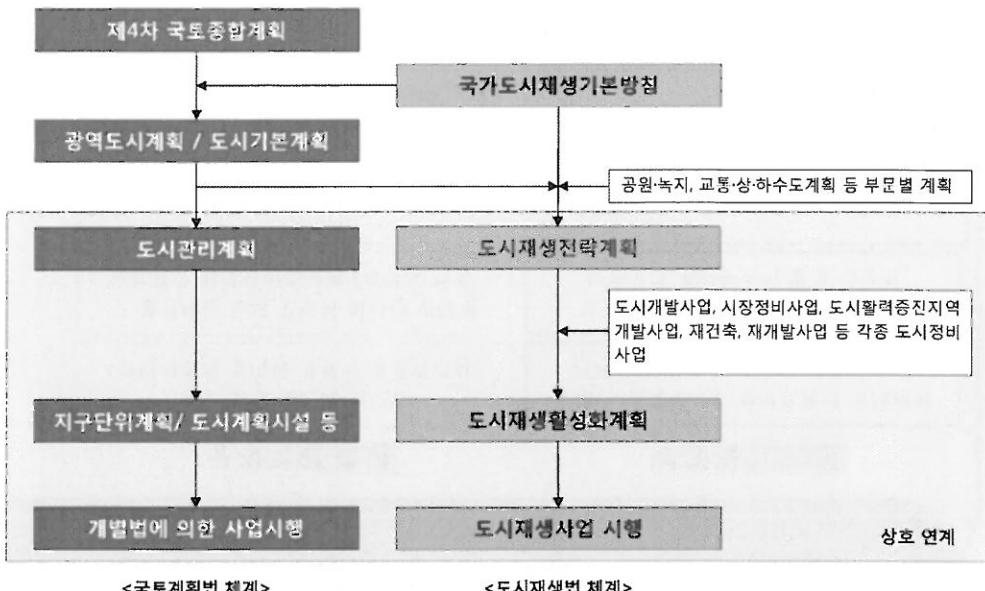
지자체 차원

- 도시재생전략계획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

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, 균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뉨

8/28

02. 도시재생 계획체계



9/28

III. 자력형 도시재생 기반구축

1. 도시재생전담조직 설치 · 운영
2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· 운영
3.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· 운영
4. 도시재생추진기구
5. 주민협의체
6. 도시재생조례 제정

01.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1. 법적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(전담조직의 설치)제1항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1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)제1항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1조(전담조직의 설치·기능)

2. 업무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(전담조직의 설치)제2항
 -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·관리
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·조정·관리·지원
 - 관계 기관,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
 -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·운영
 -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
 -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
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
 - 재원 조달 및 관리
 -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11/28

01.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2. 업무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(전담조직의 업무)
 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지원
 -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
 -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

3. 구성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(전담조직의 업무)
 -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은 특별·광역·자치시·자치도의 직제로 정함
 - 전담조직은 국·과·계·팀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직속추진단, 상임기획단의 형태로 구성
 - 전담조직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

12/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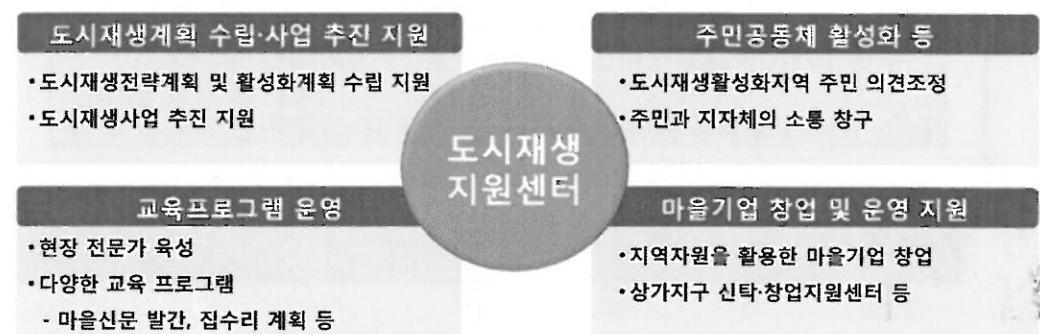
02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· 운영

1. 법적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제1항
 - * 전략계획수립권자 설치 가능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(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제1항
 - * 도지사 또는 구청장 설치 가능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

2. 업무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제1항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



13/28

02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· 운영

2. 업무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4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
 - ① 도시재생 관련 홍보
 - ②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
 - ③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
 - ④ 지역주민 리더양성
 - ⑤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
 - ⑥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혹은 추진기구의 설립
 - ⑦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

3. 구성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(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제3항
 - ①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
 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4조(관련 공무원의 파견)
 -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

14/28

02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· 운영

4. 설치유형

- 지방자치단체 주도형(공설-공영)
 -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
- 공기업 위탁형(공설-공영)
 -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, 운영은 전문성 있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식
 - *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에 의해 위탁운영 가능
- 민간위탁형(공설-민영)
 -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, 운영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
- 민간주도형(민설-민영)
 - 민간에서 직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방식
- 민관협력형(제3섹터방식)
 - 지자체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는 법인형태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방식

15/28

03.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· 운영

1. 법적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지방도시재생위원회)제1항
 - *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·운영 가능

2. 역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지방도시재생위원회)제1항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심의·자문
 -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·자문
 - ③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·자문

3. 구성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(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·운영)제1항
 - ① 위원수
 -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: 25명 이상 30명 이내
 -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: 20명 이상 25명 이내
 - 시·군 또는 구: 15명 이상 25명 이내

16/28

03. 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

3. 구성

-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
-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
(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/2이상이어야 함)
 1.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
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
 3. 문화, 인문·사회, 교육, 복지, 경제, 토지이용, 건축, 주거, 교통, 도시설계, 환경, 방재,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기타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지방도시재생위원회)제2항
 -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

17/28

04. 도시재생 추진기구

1. 법적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5조(도시재생신탁센터·창업지원센터 등의 설치)제1항
 - 공설공영형 :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
 - 공설민영형 :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
 - 민설민영형 : 민간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

2. 업무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7조(도시재생신탁센터·창업지원센터 등의 설치 의 업무)
 - 공실 점포 등 쇠퇴시설을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도시재생 신탁 관련 업무
 -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
 -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 -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활성화 관련 업무

18/28

04. 도시재생 추진기구

3. 구성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6조(도시재생신탁센터·창업지원센터 등의 조직 구성)
 -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 구축
 - 사무국,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

4. 운영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18조(도시재생신탁센터·창업지원센터 등의 운영)
 - 사무국은 산·학·민·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
 - 운영회의, 종합평가회의 등을 실시
- * 운영위원회의 역할
 - 도시재생신탁·창업지원사업의 방향
 - 도시재생신탁·창업지원사업의 계획
 - 도시재생신탁·창업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사항
 - 기타 도시재생신탁·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9/28

05. 주민협의체

1. 법적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20조(주민협의체의 설립)
 -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 가능

2. 지원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」 제21조(주민협의체의 지원)
 -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 가능
 -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

20/28

06. 도시재생조례 제정

※ '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도시재생조례 제정 필요

1. 도시재생전담조직 운영방안(도시재생추진단 등)
2.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·지원 방안(도시재생실탄업무센터 등 포함)
3. 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
4. 도시재생추진위원회(협치기구) 구성·운영 방안
5. 기타,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법·령이 위임한 사항과 해당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

21/28

IV. 맺음말

행정 주도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은
성공하기 어렵다

23/28

행정의 지원이 없는 도시재생은
성공하기가 더욱 어렵다

24/28

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은
주민이 주도하고
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
형태이다

25/28

일본 ‘중심시가지 활성화법’에 의한
TMO사업의 경험 !

26/28

거버넌스형(협치체제형)
도시재생 기반구축은
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
기본요건이다

27/28

감사합니다.

28/28